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1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는 정신질환자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 수행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 나. 전문 법인(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전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 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2007년 최초 위탁한 지역사회전환시설(구 단기보호시설) 새오름터는 전국 최초 병원에서 지역으로 탈원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여 서울시립고양정신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음.
- 2007년 수탁이후 현재까지 4회, 10년 이상 연속하여 모덕의료재단이 수탁받아 운영 하였기에 재위탁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접수 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탁기관 선정)

다. 위탁사무 내용

-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 등 탈원화 대상 우선 관리
-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 및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사업
- 지역내 정신질환자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단기집중 재활 훈련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연계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서비스 제공
- 기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합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2길 4
- 운영주체(지정병원) : 의)모덕의료재단(고양정신병원)
- 종사자현황 : 8명 (정신보건전문요원 7명, 사회복지사 1명)

○ 시설현황

운영법인	시설물	시설현황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고양병원)		시설명 : 새오름터(시유지 건물) · 입소정원 : 25명 · 주소지 : 은평구 연서로 22길 4 · 건물(연면적/ 층수): 554.08㎡/지하1층, 지상3층 · 대지면적 : 232.10㎡ · 2005년 12월부터 운영 · 연락처 : 3157-0885 (시설장: 서옥순)

마. 민간위탁기간 : 5년(2017.12.30. ~ 2022.12.29)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77,873천원(2018년)

○ 산출근거 : 인건비 428,743천원, 관리운영비 41,130천원
프로그램비 8,000천원

항목	예산액(천원)	산출근거
총 액		477,873,000원
인건비 (428,743)	인건비 (428,743)	· 새오름터 8명 인건비 · 직원8명 기본급 247,313,000원 · 직원8명 재수당 76,026,110원 · 퇴직충담금 : 30,263,176원 · 4대 보험료 : 33,871,974원
관리운영비 (457,697)	관리운영비 (41,130)	· 여비: 1,320,000원 · 교육훈련비 : 2,000,000원 · 공공요금 및 제세 23,481,000원 · 소모품비 : 2,539,000원 · 우편통신비 및 유인물비 : 1,050,000원 · 차량유지비 : 1,600,000원 · 기타 9,140,000원
프로그램비 (8,000)	프로그램비 (8,000)	· 프로그램 운영비 : 8,000,000원

아. 민간위탁 재위탁 적격자 심의결과 : 적정 (보건의료정책과-37524
'17.11.2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정신재활시설 종류 및 사업) 【별표 10】

종 류		사 업
2. 재활훈련 시설	다. 지역사회 전환시설	지역내 정신질환자에게 일시 보호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p>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조윤희(☎ 2133 - 7546)